

세무관세 뉴스

2024년 11월



주요 이슈 하이라이트

세무행정 (Tax Administration)

- 개인소득세("PIT") 환급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전파 협조 지침

기업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 건설 활동에 대한 법인세(CIT) 배분
- 건축 허가가 없는 임대지에 있는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 프로젝트 투자 단계에서의 토지 임대비용
- 공장 내 나무 심기 비용
- 본사 소재지 외의 지방에서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지원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간접세 (Indirect Tax)

- 제81/2018/NĐ-CP호 시행령 개정안: 상업 촉진 활동에 관한 상업법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 수출 상품에 대한 VAT 환급 절차 지침
- 수출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조건
- 식품 제품에 대한 VAT
-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VAT
- 해외 물품 거래에 대한 VAT
- 비과세 제조 프로젝트 양도에 대한 VAT
- 생산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한 VAT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베트남 외국인 직원의 고용 소득에 대한 PIT
- 베트남과 영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에 따른 증권 상속 소득 적용 안내
- 개인이 직접 세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PIT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 대한 PIT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외국 회사에 채권 매각 시 적용되는 FCWT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 수출품 라벨링에 대한 안내
- 보세창고에 보관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된 제품에 대한 수입세 처리 안내
- 수출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한 수입세 환급
- 재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세무행정 (Tax Administration) 지침 문서

개인소득세("PIT") 환급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전파 협조 지침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기업 세무국은 소득 지급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 **전자 세무 계정 활성화 촉진:**

직원들이 세무 당국과 전자 거래 계정을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개인소득세(PIT) 정산 및 환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기업 세무국과 협력하여 직원들이 **EtaxMobile**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납세자 문의의 신속한 해결:**

소득 지급 기관은 개인소득세(PIT) 정산 및 환급 절차에서 직원들이 겪는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여 신속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IT 정산, 면제 또는 환급과 관련된 어려움은 조직의 지정된 연락 담당자를 통해 대형기업 세무국으로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사칭 사건 신고:**

납세자가 사칭 시도를 감지하거나 의심스러운 정보를 받은 경우, 이를 세무 당국이나 소득 납부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검사, 검증 및 조치가 보장된다.

- **사기성 애플리케이션 대비:**

납세자는 비공식 출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설치 과정 중 화면 조회, 데이터 입력 또는 기기 제어 권한을 자주 요청하는 등 사기성 애플리케이션의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대기업 세무국의 2024년 10월 18일 제
1345/CT-QLT2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지침 문서

건설 활동에 대한 법인세(CIT) 배분

회사가 본사가 위치한 지방과 다른 지방에서 건설 활동을 수행한다면, 이들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CIT는 생산 시설로 분류된 종속 단위나 사업장에 대한 규정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다. 이는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28일 제4864/TCT-KK호 OL)

건축 허가가 없는 임대지에 있는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건축 허가가 없고 (2014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건설 목적의 임대지에 세운 고정 자산 및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는:

- VAT(VAT)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CIT 감가상각비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 CIT 감가상각비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24일 제4781/TCT-CS호 OL)

프로젝트 투자 단계에서의 토지 임대비용

확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관련된 토지 임대비용은 증명서에 명시된 허용된 토지 사용 기간 동안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상각될 수 있다. 이는 비용이 유효한 세금계산서와 문서로 증명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상업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Long An 세무국의 2024년 10월 17일자 제4588/CTLAN-TTHT호 OL)

공장 내 나무 심기 비용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서 환경 위생을 유지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요구하는 공장 내 나무 심기 비용은 회사의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비용은 유효한 세금계산서와 문서로 증명되면 VAT(VAT)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법인세(CIT)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10월 31일 제28365/CTBDU-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지침 문서

본사 소재지 외의 지방에서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회사가 본사 소재지와 다른 지방에서 부동산 양도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양도 활동이 이루어진 세무기관에서:** 회사는 이 활동의 과세소득에 따라 계산된 CIT과세 매출액에 1%를 곱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본사가 소재한 세무기관에서:** 회사는 모든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해 CIT 정산 신고를 합니다

또한, 생산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법인세 목적으로 공제된 산업단지 관리비와 토지 임대 비용은 부동산 양도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Bac Ninh 세무국의 2024년 11월 5일 제 4777/CTBNI-TTHT호 공문)

지원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Bac Giang 세무국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 특히 우선 지원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하였다.

1.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사회경제적으로 비우대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적격 프로젝트는 2년간 법인세 면제와 이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첫 번째 연도 또는 첫 3년간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네 번째 연도부터 적용된다.

2. 지원산업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우선 지원산업 제품을 생산하고 유효한 인센티브 인증서를 보유한 프로젝트는 다른 제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인센티브를 지원산업 제도로 이전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기존 제도에서 이미 사용된 기간을 차감한 후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소득 구분

기업은 법인세 준수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대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해야 한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4년 11월 20 제 8005/CTBGI-TTHT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제81/2018/ND-CP호 시행령 개정안: 상업 촉진 활동에 관한 상업법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2024년 10월 10일, 정부는 제81/2018/ND-CP호 시행령("제81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128/2024/ND-CP호 시행령("제81호 시행령")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81호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로모션 활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경우 추가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업이 프로모션 활동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오락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모션 목적의 행사 개최.
- 고객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상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공지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이전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 구매 바우처와 서비스 바우처를 포함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2. 집중 프로모션 프로그램 실행 기간 제한 규정 폐지

집중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경우 시간, 일, 주, 월 또는 프로모션 시즌으로 결정되는 프로모션 활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프로모션 활동 온라인 신고/등록 방법 업데이트

- **프로모션 활동 신고 절차:** 산업무역국 이메일을 통한 문서 제출 방식을 폐지하고, 기업은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지방행정절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프로모션 활동 등록 절차:** 두 개 이상의 성 또는 중앙 직할시에서 진행되는 경우, 기업은 산업통상부 행정절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개의 성 또는 시에서 진행되는 경우, 지방행정절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서식 및 신청 서류의 보완, 대체, 폐지

당첨자가 없는 상품 가치의 50%를 국가 예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Form 09(국가 예산 기여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딜로이트 권고 사항

제128/2024/ND-CP호 시행령의 발행은 제81/2018/ND-CP호 시행령의 5년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새 시행령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특히 기업들이 자주 활용하는 프로모션 프로그램 신고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프로모션 활동을 유연하고 적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VAT(VAT) 및 법인세(CIT) 관점에서 이번 시행령은 프로모션 활동에 세금 정책을 적용하는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정부의 2024년 10월 10일 제128/2024/ND-CP호 시행령)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수출 상품에 대한 VAT 환급 절차 지침

사전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서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납세자 정보를 참고하여 세무 당국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환급 대상 및 사례를 결정한다.

환급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세무 당국이 관리하는 정보와 상이한 경우, 납세자에게 설명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가 발행된다. 추가 자료 제출에 소요된 시간은 VAT 환급 신청 처리의 규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 당국은 사전 환급 신청 사례에 대해 사후 감사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은행 지급 증빙을 검토하고 대조하여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정하며,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처리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1월 06일 제 5025/TCT-KK 호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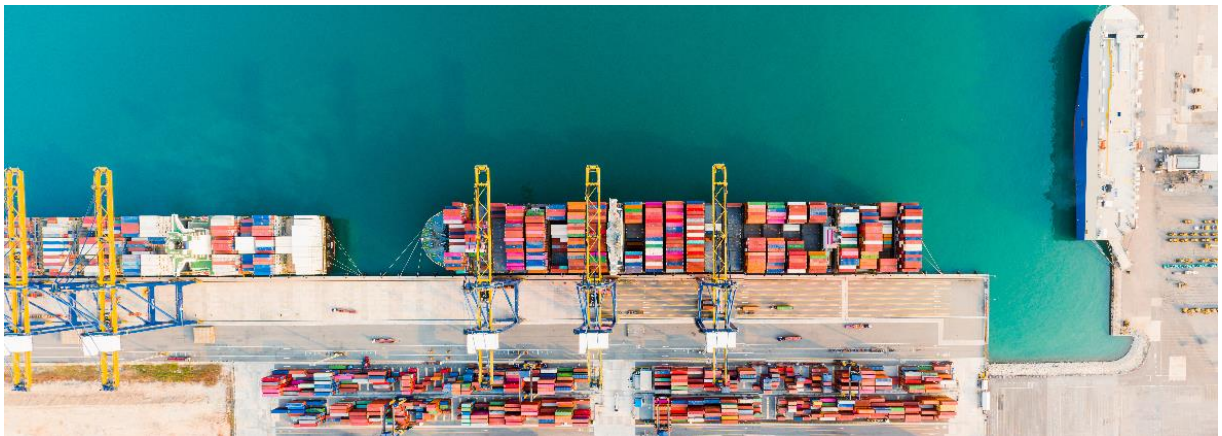
수출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조건

회사는 투자 단계를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해 VAT 환급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미환급 VAT 금액을 사업 및 생산 단계 동안 제01호 VAT 신고서(Form No. 01/GTGT)에 이월하여 신고했습니다.

환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출품에 대한 매입 VAT는 투자 단계, 건설, 고정 자산 취득에서 발생한 VAT를 포함하며, 이는 투자법에 따라 생산 및 수출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위 매입 VAT 금액은 국내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 VAT를 상계한 후에도 **3억 VND 이상**이어야 환급 자격이 주어진다.
-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VAT 환급 금액은 해당 재화 및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14일 제 4566/TCT-KK 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식품 제품에 대한 VAT

육류, 어류, 채소 및 과일 중 농업, 축산업 또는 양식업 제품으로서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가공만 거친 제품의 경우:

- **교육 기관(비법인)에 판매하는 경우:** 학생들의 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경우, 5%의 VAT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법인에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VAT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니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18일 제 4662/TCT-CS 호 공문)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VAT

유효한 부동산 중개 면허를 소지하고, 부동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중개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별 부동산 중개인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세금 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과세 등록을 완료하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관련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VAT: 5%
- 개인소득세(PIT): 총 수익 기준으로 2%

민법에 따라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는 인가된 부동산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의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는 2021년 제 40/2021/TT-BTC 호 시행규칙의 제8조 제2항 b호에 명시된 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행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24일 제 4784/TCT-CS 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해외 물품 거래에 대한 VAT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직접 해외로 판매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0% VAT가 적용된다. 이는 물품의 인도 및 수령이 전적으로 베트남 외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2013년 12월 31일 재무부의 제219/2013/TT-BTC 호 시행규칙의 제9조 제2항 a호에 명시되어 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10월 23일 제 27668/CTBDU-TTHT 호 공문)

생산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한 VAT

회사는 VAT 환급 감사를 받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 발생한 매입 VAT에 대해 환급을 거부당했다. 또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비현금 지급 증빙이 부족했다.

회사가 이후에 필요한 비현금 지급 증빙을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생산 또는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연도에서도 매입 VAT는 공제되지 않는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11월 01일 제 28546/CTBDU-TTHT 호 공문)

비과세 제조 프로젝트 양도에 대한 VAT

VAT가 적용되지 않는 제조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매입 VAT는 공제되지 않는다.

프로젝트가 원래의 목표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 양도되어 계속 진행될 경우, 10% VAT가 적용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1월 08일 제 5102/TCT-CS 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지침 문서

베트남 외국인 직원의 고용 소득에 대한 PIT

회사는 외국인 직원의 베트남 근무 기간을 근로 계약서 또는 파견 서한에 명시된 대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누진세율:** 세금 연도에 183일 이상 베트남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된다.
- **일률세율:** 세금 연도에 183일 미만 베트남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10월 26일 제/27325/CTBDU-TTHT 호 공문)

베트남과 영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에 따른 증권 상속 소득 적용 안내

영국과 베트남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에는 상속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에 대한 국제적인 관행에서도 상속세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베트남에서 증권 상속 소득을 받는 경우, 베트남 현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 신고 절차:

- 증권을 상속받은 개인: 증권을 상속받은 개인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 베트남 비거주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여러 종류의 증권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개인은 증권회사를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25일 제/4816/TCT-DNNCN 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지침 문서

개인이 직접 세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PIT

회사가 이전에 개인의 개인소득세(PIT) 신고를 대신하여 처리한 개인이 나중에 세무 당국과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발견한 경우, 회사는 PIT 최종 신고 서류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회사는 해당 개인에게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은 규정에 따라 세금 최종 신고를 직접 완료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30일 제 4917/TCT-DNNCN호 공문)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 대한 PIT

회사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과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개인이 받는 소득은 급여 및 임금에 대한 PIT 규정을 따르게 된다. 회사는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행동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전에 **10%**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을 제45/2019/QH14호 노동법 제14조에 따라 체결하는 경우(구두 계약 또는 서면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 또는 무기한 계약 등), 해당 개인은 제58/2014/QH13호 사회보험법 제2조에 따라 의무적인 사회보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10월 31일 제 28333/CTBDU-TTHT 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지침 문서

외국 회사에 채권 매각 시 적용되는 FCWT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 회사가 해외 고객으로부터의 채권을 외국 회사(채권 매입자)에게 매각하여 상품 판매 대금을 선지급 받는 활동은 외국계 계약자세(FCWT)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권 매각 활동은 대출 및 대출 이자 지급과 관련된 신용 거래가 아니다.
- 베트남 회사는 채권 매입자에게 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며, 채권 매입자가 구매자로부터 채권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베트남 회사는 외국 회사(채권 매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 2024년 10월 30일 제 4909/TCT-CS 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품 라벨링에 대한 안내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세총국은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원산지 규칙:** 수출품은 제31/2018/ND-CP호 시행령, 제05/2018/TT-BCT호 시행규칙 (제44/2023/TT-BCT호 시행규칙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및 베트남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원산지 라벨링:** 제품은 제43/2017/ND-CP호 시행령의 제10조(제111/2021/ND-CP호 시행령의 제1조 제3항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와 제15조(제111/2021/ND-CP호 시행령의 제1조 제7항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10월 30일 제 5302/TCHQ-GSQL호 공문)

보세창고에 보관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된 제품에 대한 수입세 처리 안내

관세총국은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된 후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특별 우대 수입세율 적용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1. **적용 세율:** 보세창고는 제67/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비관세 구역으로 분류된다. 보세창고에서 국내 시장으로 재수입되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우대 수입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직접 운송:** 베트남에서 보세 창고로 수출되어 국내 시장으로 재수입되는 상품은 어떠한 간섭 없이 세관 감독 하에 직접 운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10월 24일 제 5177/TCHQ-GSQL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한 수입세 환급

관세총국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 1. 세금 환급 조건:** 완제품 수출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 및 물품에 대해 납부한 수입세는 완제품이 수출되거나 비관세 구역으로 이동하여 법령 제134/2016/ND-CP 호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된다.
-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 생산을 위한 통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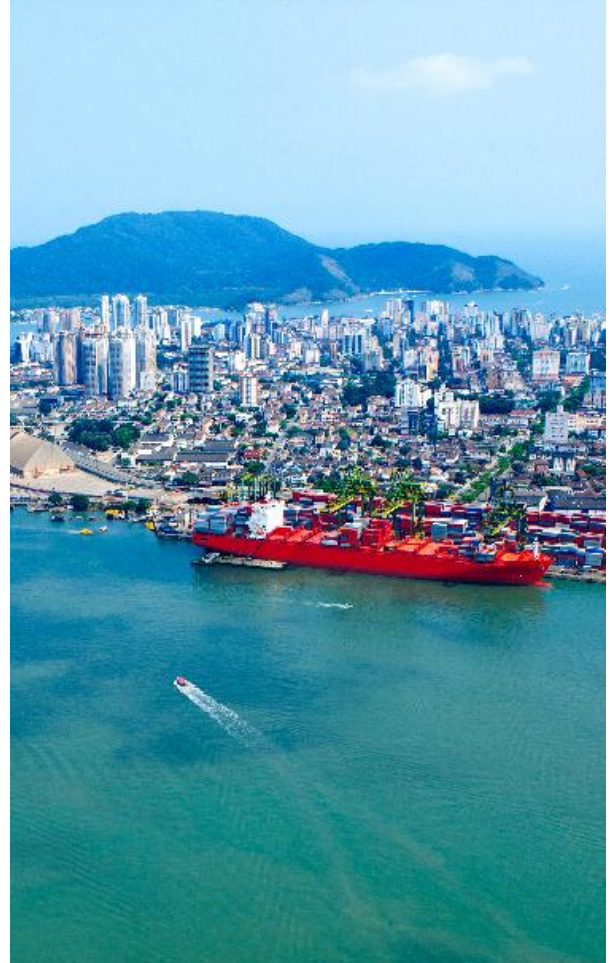
(관세총국의 2024년 10월 29일 제 5262/TCHQ-TXNK 호 공문)

재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수출 시 수출세를 납부한 상품이 베트남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제107/2016/QH13호 수출입세법 제19조 2항의 규정을 충족하면, 해당 상품은 수출세 환급 대상이 되며 수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세금 미부과 절차 및 관련 서류는 제134/2016/ND-CP 시행령 제37a조 3항 및 4항에 따라 진행하며, 이는 제18/2021/ND-CP 시행령 제1조 19항에서 보완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10월 23일 제 5144/TCHQ-TXNK 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orean Services Group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 Legal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Pham Thi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